보도자료

म्रा स्पर्धणेतु! स्पृड्डे न्युभ पेम

배포

2025. 5. 7.(수)

## 엔지니어링사업 PQ<sup>1)</sup>기준 개정, 공정 경쟁 환경 마련

- 사업자 선정 고시 개정으로 시장 독점 구조 완화, 중소·후발업체 참여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적 중심의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sup>1</sup>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절대평가\* 도입, <sup>2</sup>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sup>3</sup>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차등화, <sup>4</sup>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10억 원 미만 소형·중형사업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마련했다"며,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PQ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진적 평가모델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재준 (044-203-4340)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원 (044-203-4345)







<sup>1)</sup>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 역량을 사전 평가해, 통과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개선 사항	개선 내용			
	<ul><li>▶ 개정이유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상대평가만 허용하여, 소수 대형업체가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후발업체 진입장벽을 형성 하는 문제가 있었음</li></ul>			
1. 시입 수행실적 평가 (현행) 상대평가 ↓ (개정) 소형·중형시업 절대평가 도입 / 대형사업 상대평가	<ul> <li>가정내용: 소형·중형사업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li> <li>· 기술 표준화가 정립된 비파괴검사 분야는 대형사업까지 절대평가 적용</li> <li>· 기타 대형사업은 상대평가 유지</li> <li>· 절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단, 기준금액(또는 건수, 기간 등)은 발주청이 정하며, 순위별 수행실적률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li> <li>&lt;평가산식&gt;</li> <li>총실적 합계금액(또는 건수,기간등)</li> </ul>			
	수행실적률(%)			
	▷ <b>개정이유</b>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이후 타 사업 추가입찰 등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자를 무단 교체하는 불공정 관행이 존재			
2. 참여기술자 사업참여 의무 및 교체 기준 명확화 (제7조/신설)	<ul> <li>▶ 개정내용 : 평가대상 기술자의 당해 사업수행 참여 의무 명시 및 기술자 교체기준을 명확화</li> <li>•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단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청 승인 후평가점수가 동등 이상인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발주청이 차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감점할 수 있도록 함</li> </ul>			
3. 업무 중복 감점 (현행) 일괄 0.2점 감점 ↓	▷ 개정이유 : 업무중복에 따른 감점에 있어 기술자별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경중 차이 반영 필요			
(개정) 시업 책임 0.3점 분야별 책임 0.2점 참여 기술자 0.1점	▷ 개정내용 : 업무중복 건수당 감점을 사업책임기술자 0.3점, 분야별 책임 기술자 0.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0.1점으로 기술자별 차등화			
4. 재정 건실도 평가 (현행) 신용평가+재무비율평가 ↓ (개정) 둘 중 택일	<ul> <li>▷ 개정이유 : 기존은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자본비율, 유동비율)을 모두 평가해 재무 요소에 대한 중복평가 가능성 및 행정부담이 존재</li> <li>▷ 개정내용 :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간소화</li> </ul>			